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장애인복지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인정기준을 확대하여
이들에게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1. 20. ~ 3. 2.)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비대상

대통령령 제 호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두 눈의 중심시야 20도 이내에 안구운동장애(복시)가 있는 사람
별표 1 제8호 중 “재발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·행동·사고”를 “재발성 우울장애, 치료불응성인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, 강박장애, 뚜렛장애, 기면증에 따른 감정조절·행동·사고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제20조의2에 따른 정밀심사 의뢰기관의 심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밀심사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3. 시각장애인(視覺障礙人) 가.~라. (현행과 같음) <신설>	3. 시각장애인(視覺障礙人) 가.~라. (현행과 같음) 마. 두 눈의 중심시야 20도 이내 에 안구운동장애(복시)가 있 는 사람
8. 정신장애인(精神障礙人) ----- --재발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 조 절 · 행 동 · 사 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8. 정신장애인(精神障礙人) ----- --재발성 우울장애, 치료불응성인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 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, 강박장애, 뚜렛장애, 기면증에 따른 감정조 절 · 행 동 · 사 고 ----- ----- 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299
	(044) 202 - 3298